

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별도 안내
본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전화번호(자택)	휴대전화번호	
	주소		
배우자	성명	주민등록번호	
	전화번호(자택)	휴대전화번호	
	주소		

위의 사람은 『기초연금법』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기 위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(서명 또는 날인)

배우자 (서명 또는 날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의사항

1. 아래 유의사항을 듣고 확인한 경우에는 오른쪽 []란에 √ 표시와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이력관리는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.

이력관리를 통해 안내된 이력조사 결과는 전산자료로 조회된 공적자료 위주로 적
용된 결과이므로 실제 신청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,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
별도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나. 이력관리에 따른 조사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개별조사가 아닌 원칙적으로 연 1회
이루어지는 일괄조사입니다.

2. 이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5년입니다. 다만,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
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.

소득, 재산 및 금융정보·신용정보·보험정보 제공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, 기초연금법 시행령, 제15조제1항제3호, 제2항제3호에 따른 이력조사의 경우에
는 소득조사, 재산조사 및 금융정보·신용정보·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·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관련 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)에게 소득정보, 재산정보
및 금융정보·신용정보·보험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또한, 기초연금법 시행령,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
공통서식(소득·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)의 정보를 활용함에 동의합니다.

수급희망자 본인 (서명 또는 날인)

배우자 (서명 또는 날인)